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신설 등〉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6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요 및 총괄검토의견	3
2.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5
가. 보전국유림 처분 등에 관한 특례	5
나. 농업 진흥 관련 특례	10
다.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 설치 등	21
라.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특례	27
마.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37
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41
사.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4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양수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1.
3. 회 부 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강원지역은 접경지역, 환경 보존지역 등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이중 삼중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음.

특별법 통과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지역개발을 위한 일부 특례가 반영됐으나, 강원자치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된 보전국유림 등을 도지사가 재구분 또는 매각·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안 제50조).

다. 「농지법」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농지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요건과 절차는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53조의2 신설).

라. 도지사는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총저수용량 10억톤 이상의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에게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기금에 내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마. 도지사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역이용협의를 할 수 있고,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9조의2 신설).

바. 강원자치도 내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해당 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안 제69조의3 신설).

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으로 할 수 있음(안 제69조의4 신설).

아. 미활용 군용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낸 경우에는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

Ⅲ. 검토의견

1. 개요 및 총괄검토의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함)는 2022. 6. 10.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 6. 11. 시행되면서 종전의 강원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설치되었음.

또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강원자치도를 설치하는 외에 강원자치도에 실질적인 특례와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하였고 제명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도법」”이라 함)으로 개정되어 2024. 6. 8. 시행되었음.

<제정법률 및 전부개정법률 개요>

구 분	제정법률	전부개정법률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및 시행	(제정) 2022.6.10 (시행) 2023.6.11	(전부개정) 2023.6.7 (시행) 2024.6.8
구성	본칙 총 23개 조항	본칙 6편 - 11장 -2절 총 84개 조항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지원방안 마련 (농업, 임업, 군사보호 등 권한이양 및 특례마련)

개정안은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보전국유림 처분에 관한 특례, 농업 진흥에 관한 특례 등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강원자치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부개정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강원자치도에 대한 권한이양과 특례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대폭 신설하는 내용의 현행법 전부개정법률이 2024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강원자치도 또한 전부개정법률의 집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화 발전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발굴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에 부합한 특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가. 보전국유림 처분 등에 관한 특례

개정안은 종전 산림청장이 행사하던 보전국유림¹⁾의 재구분 또는 매각·교환 및 사용허가 권한의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조의2(보전국유림 처분 등에 관한 특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제17조 및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전국유림을 재구분하거나 매각·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매각·교환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35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현행 「강원도법」 제35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제36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²⁾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있음.

2) 「강원도법」

한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에 의하면 보전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림청장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또한, 산림청장은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³⁾.

제35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6조(진흥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④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 1의2.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삭제
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보전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존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보전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안은 「국유림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① 진흥지구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재구분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보전국유림을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보전국유림을 재구분 또는 매각·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기·통신·방송·가스·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삭제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이 수목장립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양봉농가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나. 임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

다.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이는 현재 강원자치도 내 산림 중 보전국유림 차지하는 비중이 55.6%이나, 현행 「국유림법」은 보전국유림의 처분·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준보전국유림⁴⁾으로 재구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보임⁵⁾.

<강원자치도 내 산림 현황>

(단위 : ha, %)

전체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기타	전체
	보전	준보전				
765,338(56.0)	759,416(55.6)	5,922(0.4)	94,389(6.9)	482,033(35.3)	24,884(1.8)	1,366,644

※ 자료 : 강원자치도

산림청장이 행사하던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전국유림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이라는 강원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산림청은 ① 「강원도법」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구 내 보전국

4) 보전국유림과 달리 준보전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음.
「국유림법」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5) 특히, 현재 강원자치도는 고성통일전망대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제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추진중인데, 해당 진흥지구 내에도 보전국유림이 포함되어 있음

유림에 대해 재구분 및 매각·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② 보전국유림을 산림이용진흥지구개발계획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⁶⁾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국유림법」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임.

6) 의안번호 2200214,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2024.08.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국유림의 구분)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1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1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의 산림이용진흥지구개발계획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농업 진흥 관련 특례

개정안은 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② 강원자치도 내 농지취득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및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u><신설></u> <u><신설></u>	⑤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2(농지취득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 「농지법」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과 절차는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한국농어촌

현행	개정안
	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안 제50조제5항)

현행 「농지법」 7)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용도지역⁸⁾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됨.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 등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7)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8)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국토계획법」 제2조제15호),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됨(동법 제36조제1항)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다시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종전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국토계획법」 제42조9)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항만·어항구역 등 일부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에도 이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9) 「국토계획법」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자치도 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만 용도지역 환원 특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및 용도지역과의 형평성,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 입법례로서 「국토계획법」 이외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은 각종 구역·단지·지구 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용도지구 환원 관련 유사 입법례>

구역·단지·지구 등	근거법률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3⑤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8②
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7②
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12④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③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제8조¹⁰⁾에서는 농업진흥지역

10) 「국토계획법」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등 타법에 따른 구역 등을 해제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농업진흥지역은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체계 정립 전인 1992년 12월부터 지정되었으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 용도지역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특례를 부여할 경우 법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53조의2)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¹¹⁾, ②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발급 요건과 절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¹²⁾.

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11)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또한, 「농지법」은 ③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하여¹³⁾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강원자치도 내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과 절차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이상 소유하지 않은 농지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12)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① 주말·체험영농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소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 가능
② 농지취득 자격	발급요건 및 절차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함	발급요건 및 절차를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함
③ 농지임대수탁사업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위탁 가능	3년 미만 소유한 농지도 위탁 가능

이는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활성화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강원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이 되는 농지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도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관련하여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보임.

참고로, 최근 5개년 강원자치도 내 주말·체험영농 농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강원자치도 내 주말·체험영농 농지 현황 >

(단위 : 건, m²)

연도	합계		자기노동력		위탁(임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계	29,079	11,358,263	29,054	11,305,440	25	52,823
2020	7,748	2,934,948	7,742	2,922,559	6	12,389
2021	9,117	3,659,785	9,112	3,649,185	5	10,600
2022	5,598	2,255,324	5,593	2,244,424	5	10,900
2023	3,942	1,475,849	3,937	1,464,949	5	10,900
2024	2,674	1,032,356	2,670	1,024,322	4	8,034

※ 자료 : 강원자치도

둘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 및 절차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소유 연한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023.8.16. 「농지법」 일부개정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소유연한이 도입되었다는 점¹⁴⁾, 인근 지방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농지임대수탁사업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대한민국 헌법」이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위탁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⁵⁾.

참고로, 최근 5개년 강원자치도의 농지임대수탁사업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강원자치도 농지임대수탁사업 실시 현황>

연도	건수	필지	면적(m ²)
합계	13,643	26,777	62,558,804
2020	2,228	4,480	10,686,166
2021	2,812	5,635	13,462,596
2022	2,630	5,112	12,009,436
2023	3,445	6,612	14,849,445
2024	2,528	4,938	11,551,161

※ 자료 : 강원자치도

14) 종전 「농지법」은 농지임대수탁제도를 통해 위탁 임대가 가능한 농지의 수탁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로 인하여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 자도 농지 취득 직후 농지를 위탁 임대하여 자경 및 농업경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어 농지 투기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11800)」, p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대표발의, 2118000)이 발의되었고, 국회 심사를 거쳐 2023.8.16. 공표 및 시행되었음.

15)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구 분	의견 및 사유
§53①	-(신중검토)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기반을 정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 중인 지역으로, 단순 여가 선용 등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u>농지의 효율적 활용</u> (영농기계화,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인근 농가 <u>피해나 환경오염</u> (생활쓰레기 소각 등)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3②	-(신중검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u>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u> 해 주고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u>강원자치도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u> 는 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요건 및 절차를 지역마다 달리 적용할 경우 <u>국민의 혼란만 가중할 우려가 크다</u> 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3③	-(신중검토) 강원특별자치도는 <u>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u> 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u>해당 조문의 취지</u> 가 농지 임대수탁제도가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u>최소 수탁 기준(3년 이상)</u> 을 정한 것이라는 점, <u>정책의 일관성</u> 등을 감안할 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다.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 설치 등

개정안은 ① 도지사로 하여금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도지사가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7조의2(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해당 다목적댐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③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 중 총저수용량 10억톤 이상의 다목적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 별도로 해당 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에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7조의3(댐수입금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수입금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사용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징수한 <u>사용료</u>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u>사용료</u> 3.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댐사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금 등의 자료 제출의 방법, 시기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7조의2)

현행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이라 함)은 다목적댐¹⁶⁾의 관리청이나 수탁관리인은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댐 주변지역¹⁷⁾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발전판매 및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 수입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16)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등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댐을 의미함(「댐건설관리법」 제2조)

17) 「댐건설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 주변지역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등임.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도지사가 다목적댐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및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총저수용량이 10억톤 이상인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댐건설관리법」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¹⁸⁾과 별도로 해당 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일부를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자원>

현행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자원	개정안의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20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2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

18) 「댐건설관리법」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자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자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자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강원자치도 내 다목적댐은 총 2개소(소양강댐, 횡성댐)인데, 그 중 총저수용량이 10억톤 이상인 다목적댐은 소양강댐임. 개정안은 소양강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활용하여 댐 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받는 피해를 보상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강원자치도는 소양강댐 준공 후 50년간 주변지역의 피해액은 약 6조 8,300억에서 10조 1,500억원으로 추정되나, 지원금 현황은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2년간 1,120억원으로 피해추정액의 1~2% 수준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며, 전국 27개 댐 전체 발전 및 용수판매 수입금 4,728억원 중 소양강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하는 951억원이나, 실제 지원금은 댐수입금의 8.2%에 불과한 78억원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인 15.8%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임.

<강원자치도 내 다목적댐 수입금 및 지원금 현황(2022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댐수입금 (A)	지원금 (B)	수입금 대비 지원금 (B/A)
소양강댐	95,126	7,789	8.2
횡성댐	1,806	986	54.6
전국	472,800	74,666	15.8

※ 자료 : 강원자치도

따라서,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댐사용권자의 재산권 침해 여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이라는 강원자치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임.

참고로, 환경부는 현재 댐용수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원가의 약 68%)으로 판매중으로, 시설 교체·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회수도 어려운 실정이며, 2016년 이후 장기간 용수요금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수입금을 과도하게 추가 출연하게 될 경우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적정 시점의 시설 투자가 제약됨에 따라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용수 요금 인상까지 초래하여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57조의3)

개정안은 도지사가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에게 댐사용권자가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발전판매 수입금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댐사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댐수익금에 대한 자료 공개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전술한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영업실적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¹⁹⁾에 해당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²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환경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경영·운영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영업실적에 관한 자료를 개별법률에 따라 댐 관리를 지휘·감독하지 않는 특정 지자체(강원자치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1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5.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도로·철도·전기·가스 등 공공시설 중 댐의 수입금 자료만을 한정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라.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특례

개정안은 해역이용협의, 어구의 규모 제한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에게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 지방어항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변경, 항만도기본계획 수립, 어민에 대한 안전조치 수립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9조의2(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와의 해역이용협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③ 「수산업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어촌·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립한 항만도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지침을 수립하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의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법 제20조 및 제84조에 따르면 해역이용협의를란 해역이용의 적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용행위가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함.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의 대상>

구분	면허등
1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양식업면허(「양식산업발전법」)
3	바다골재채취예정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바다골재채취의 허가(「골재채취법」)

개정안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도지사나 해역이용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역이용협의를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으로,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운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 공유수면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해역이용협의 기준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공유재인 해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통일적·일관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

가 있으며, 지자체별로 상이한 협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장 혼란이 우려되며, 개발우위의 사업 추진으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2항)

현행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함) 제2조에 의하면 항만지역등²¹⁾ 중 ①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② 해당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²²⁾.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선박배출 규제해역을 지정하여 선박 소유자의 황산화물 배출을 제한할 수 있고, 대기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저속운행해역을 고시할 수 있음²³⁾.

21) “항만지역등”이란 ①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의미하는 항만구역, ② 어항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의미하는 어항구역, ③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등을 의미함(「항만대기질법」 제2조제1호).

22) 「항만대기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항만지역등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3) 「항만대기질법」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강원자치도 내 항만지역등 중 ①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②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현재 전국에 19개의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강원자치도 내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지사에게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강원자치도의 자연환경적 특성에 맞는 해양환경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전국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현황>

구 분	항 만
서부권(6)	경인항, 인천항, 서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및 태안항의 항만구역
남부권(13)	여수항, 광양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울산항 및 포항항의 항만구역

※ 자료 : 강원자치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

질 개선의 기본목표(이하 “대기질개선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기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저속운항해역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각 항만별 물동량, 선박 통항 규모 등에 관한 전국 단위의 종합적 조사가 필요하며,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 지정되면 후속 효과로서 선박 배출규제 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3항)

현행 「수산업법」 제60조제1항²⁴⁾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음.

개정안은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으로,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금지

24) 「수산업법」

제60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구역, 금지기간 등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 강원 자치도의 지역적 특수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이라는 강원자치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제87조²⁵⁾에 따라 도지사에게 어구의 규모 등 제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권한 일부가 이미 부여되어 있으며, 근해어업이 전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허가어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지사가 근해어업의 어구규모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도지사의 입법행위가 타 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5) 「수산업법」

제87조(시·도 연안자원관리) ①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의견, 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현행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제21조 시·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²⁶⁾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에게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어항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어항 운영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지방어항 지정 및 어항개발

26) 「어촌·어항법」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2. 지방어항: 시·도지사.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획 수립·변경 절차 간소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공유재인 협의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통일적·일관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협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장 혼란이 우려되며 특히 개발 우위의 사업 추진으로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5항 및 제6항)

첫째,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항만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²⁷⁾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5항).

이는 항만기본계획에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이미 기본계획 수립

27) 「항만법」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강원자치도 차원에서 별도로 항만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항만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항만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며, 항만개발은 해양수산부에 의하여 수립된 전국 항만기본계획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둘째,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침 수립 등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제6항).

이는 최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포탄 발사 등으로부터 조업어선 및 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현재 동해 접경수역 조업어선 월선, 피랍방지 등 안전지도 및 해난사고 발생시 사고선박에 대한 구조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접경해역 안전조업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마.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일정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9조의3(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인구 10만명 미만 도시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

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
· 관리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²⁸⁾, 도시
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음.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가능 지역>

구분	지역
제1호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제2호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한, 제1호에 해당하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는 동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을 이유로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
함)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⁹⁾.

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 중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에 대한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원자치도 내 18개 시·군 중 원주·춘천·강릉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의 인구가 10만 명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강원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 수립이 가능하며, 현재 도시교통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15개 시·군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여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강원자치도 내 시·군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시·군	징수액		
	2021년	2022년	2023년
춘천시	360	528	570
원주시	706	722	1,014
강릉시	359	512	498
합 계	1,425	1,762	2,082

※ 자료 : 강원자치도

다만, 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법」”이라 함)은 개정안에 따라 이양되는 권한 중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권한만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음³⁰⁾.

30) 「제주도법」

제430조(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현행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서 “300미터 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9조의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으로 할 수 있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정문화유산³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내 범위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는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행위 등에 대해 제한이 가해짐.³²⁾

31) “지정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국보, 사적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유산, 그 외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자료 등을 의미함(「문화유산법」 제2조제3항)

32) 「문화유산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

개정안은 「문화유산법」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300미터 안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적용되던 규제를 완화하고 강원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보존지역을 운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유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 보호 필요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강원자치도에 의하면 도지정문화유산 228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은 300미터 내 범위에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유산 163개소의 경우 300미터 초과 500미터 내 범위에서 지정되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현행 「문화유산법」에 의하면 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수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고시를 통하여 정할 수 있어, 현행법 및 강원자치도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 및 규제 내용을 운영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강원자치도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으로 분리되었으므로 자연유산도 규제 완화 특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사.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개정안은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건축물 설치 등 업무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하도록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② 미활용 군용지의 매각대금을 분담 시 「국유재산법」상 특례를 규정하고, ③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④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u><신설></u>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에게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생략) 제72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 -----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 협조구역에 있어서의 협의업무 위탁 절차 등은-----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2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낸 경우에는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유재산법」을 따른다. 제73조의2(국방·군사시설의 이전 지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국방·

현행	개정안
<신설>	군사시설을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3조의3(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5조제1항·제4항·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안 제70조)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고 함)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³⁾

33) 「군사기지법」

제3조(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등>

구분	내용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구역으로, 군사활동 보장 수준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
민간인통제선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
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해 지정되는 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對空)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등 내에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³⁴⁾과 협의하여야 하나³⁵⁾,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4)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의미함(「군사기지법」 제8조제2항)

35) 「군사기지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5. 해안의 굴착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 해운의 영위

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보호구역등에 대해서는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협의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으로써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⁶⁾.

개정안은 도지사 또는 도 내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도지사 또는 도 내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허가제도를 운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관할부대장 뿐만 아니라 관리부대장도 협의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안 제70조제3항(종전 제70조제2항)의 “관할부대장”은 “관할부대장등”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 부표(浮標)·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36) 「군사기지법」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를의 위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제15조 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 제72조)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축조,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축조 등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⁷⁾.

개정안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러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 필요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매각대금 납부기준 금액의 적정성,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이라는 강원자치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

37)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제주도법」은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국제지구에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 위해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미활용군용지를 보유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73조의2)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할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강원자치도 내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또는 이전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 타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성,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³⁸⁾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방식인 기부대양여제도는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하면 그 비용에 대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현물교환 기반의 제도로 비재정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을 요구하고 그 개발이익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중앙 재정 투입은 제한되며, 위험부담을 국가에 전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73조의3)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3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 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하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여부를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³⁹⁾.

개정안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소음영향도 산정방법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⁴⁰⁾ 강원자치

39)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4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변경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제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대책지역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소음대책지역 기준 마련 필요성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등을 타 공항과 달리 도조례로 정할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공항소음대책사업은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 중이므로 지자체별로 지정기준 등이 상이할 경우 타 지역 주민 반발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전국 소음대책지역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24년 10월 현재 강원자치도 내에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
2.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현행 소음대책지역 지정 현황>

시·도	시·군·구	관련 공항
서울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 일부지역	김포공항
경기	부천시·김포시·광명시 일부지역	
인천	계양구·서구 일부지역	
	옹진군·중구	인천공항
부산	강서구·사하구 일부지역	김해공항
경남	김해시 일부지역	
제주	제주시 일부지역	제주공항
울산	중구·북구 일부지역	울산공항
전남	여수시 일부지역	여수공항

※ 자료 : 강원자치도

문 의 처

02)6788-5337